

△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1. 제목 :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 DB에 대한 내용 일체
 지난 2월 6일 접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발급과정에 대한 내용일체'(접수번호 23672) 정보공개 청구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재청구합니다.
 3월 21일에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자치부는 보안상 대외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보의 종류와 그 정보가 보관, 운용되는 방식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에게 우선 알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다음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 다음 -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인이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접근하는

1. 모든 데이터베이스이름과
2. 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항목의 종류,
3. 각 데이터베이스의 담당기관,
4. 각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5. 각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망의 이름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예) 주민등록 전국색인DB, 담당기관: 행정자치부, 항목: ..., 소재 : 행정자치부 중앙전산본부, 연결망 : (공중정보통신망, 주민망)

2. 제목 :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에 관한 내용

행정업무 간소화 등 업무쇄신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 준비중인

1.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종류와
 2.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담당기관
 3. 공동활용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담당기관
 4. 공동활용되는 정보의 종류
 5.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망(network)의 종류
- 에 대한 공개청구와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수집한 주민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다음 사항,

1.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2.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3. 데이터베이스 담당기관
 4.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 정보공동활용 대상 업무의 종류
 5.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담당기관
 6. 위의 정보가 공유되는 망의 종류
-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끝>

경찰청의 사실왜곡을 비판한다

경찰청이 2002년 7월 19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등 위헌확인 소송과 관련된 추가의견서에 중대한 사실의 왜곡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1. 경찰은 추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약 88%인데 반해 전과자의 지문만 수집하고 있는 일본은 약 42%, 미국인 경우 약 21%에 그치고 있음"(추가 의견서 12쪽)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외국의 경우 전국민 지문날인제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범죄자 검거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일본의 통계는 平成13년(2001년)의 통계로서 일본 범죄백서의 내용 중 총 사건발생 대비 총 범인 검거건수를 단순대비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마치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일본 범죄백서의 내용을 보면 총 형사범 발생 3,256,109건 중 검거건수가 1,389,410건으로 검거율이 42.7%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거율은 일본측으로서도 전후 최저치이고 결코 평균치가 아닌 것이다. 살인범의 경우 일본은 95%라는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절도범의 경우 검거율이 19.1%에 지나지 않아 전체 형사범의 검거율이 사실은 절도범의 급중에 따라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계의 단위가 건수 단위가 아니라 명수 단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건 몇 건에 검거 몇 건'이 아니라 '사건 몇 건에 검거자 몇 명'이라는 이상한 통계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면 2001년의 경우 살인 사건이 총 1,051건이 발생했는데 검거된 범인의 수는 1,076명에 달해서 도대체 몇 건의 사건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경찰이 고의적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범인 검거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청의 통계대로 한다면 검거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이런 통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비율계산에 있어 건수 대 건수로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공범이 다수 있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당연히 범인의 수는 범죄건수보다 많아지는 것이므로 경찰청의 통계는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볼 때 경찰청이 한국의 범인 검거율을 88%라고 하고 일본의 검거율을 42%라고 하면서 단순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일본 경찰은 범죄백서를 통해 형사범죄의 경우 각국의 통계를 비교하면서 사건발생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보다 더 떨어지지만 검거율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다. 결국 경찰청은 단순통계수치를 비교하면서 이 자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추가의견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2. 경찰청은 추가의견서에서 "95년 부여 간첩 김동식 일당 3명과 97년 울산 최정남 부부간첩 2명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신분을 위장해서 간첩활동을 했는데 지문을 폐지시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간첩검거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통일이 되기 전에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지문제도는 꼭 필요합니다"(추가 의견서 13쪽)라고 하면서 마치 지문날인제도가 있음으

로 해서 간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위 간첩사건의 경우 간첩들이 침투국가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달리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위조된 신분증의 효력은 단지 주민등록증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신분증은 국가기관에서 제작하며 그 위조와 관계된 책임의 일부는 위변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관에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95년과 97년의 경우 경찰청의 지문 전산화작업은 감식자료 전산화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며 더구나 일반인의 경우 1993년부터 진행된 30세 이하 남자의 지문전산화작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추가 의견서 4쪽) 그렇다면 위 간첩사건의 경우 애초부터 날인된 지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간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간첩검거의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위조주민등록증 소지 여부가 확인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전국민지문날인제도가 없었다면 마치 간첩들을 검거하지 못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치 지문날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간첩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추가의견서를 꾸민 것이다.

3. 경찰은 추가의견서에서 “인권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동일인 확인을 위한 우수무지를 날인 받으며, 한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40%인데 비해 미국인은 66%로 주민증이 없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주민증과 같이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마치 미국인들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문날인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미성년자들의 신원확인 안전을 위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날인받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즉, 미국에서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지문을 날인 받는 것은 경찰청의 주장처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 시행되고 있는 주(州)에서조차 미성년자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청은 미국인의 운전면허증 소지율 66%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지문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것은 통계를 고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4. 경찰은 추가의견서에서 “90년대 재일동포의 지문날인거부운동은 일본의 경우 전과자만 지문날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문날인은 곧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자국민은 지문을 날인하지 않으면서 재일동포에게 지문날인을 강제 요구함으로써 자국민과의 지위상 차별로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7세 이상 전국민이 날인함으로써 지위상 차별문제는 발생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국민과 한국국민 모두의 인격을 싸잡아 폄하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정주의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다름아닌 일본의 공무원 조직이었다. 지문날인제도가 외국인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함과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국가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를 강제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일본 공무원들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경찰청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이 한국처럼 전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가 있었다면 이와 같

은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데 일본은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에 대해서 지문날인을 강제한 적은 있지만 자국민에 대해서 지문날인을 강제하지는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경찰청의 가정이 얼마나 근거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즉, 식민지 피착취민족에게나 행하는 강제지문날인제도를 자국민에게 시행하지는 않을 만큼의 인권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일본의 국민들 역시 공무원들의 행동에서 보듯이 그러한 인권침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음을 경찰청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역시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동시에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주의국민에 대한 강제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음을 경찰청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민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위상의 차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날인제도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숙한 한국시민들의 인권의식을 의도적으로 폄하함으로써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다.

5. 경찰은 추가의견서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델란드의 생체정보기술활용윤리위원회를 첨부하면서(추가 의견서 24~25쪽) 마치 지문정보의 국가적 수집과 보관, 관리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이것은 각국 정부의 발표만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거론한 각국의 인권단체들과 정부자료들까지도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이미 영국 런던시에 “빅 브라더 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이 상을 수여할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개정 시행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6. 경찰은 추가의견서에서 “각종 계약서 작성시에도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으로 우무지 날인을 동일시 하고 있는 것도 주민등록증 발급시 날인한 지문을 전제하고 있는 등 국민에게 지문날인은 이제 거의 생활화 되어 있고”라고 하여 마치 국민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문날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인감증명의 발급에서는 공히 확인작업을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공무원들이 서명으로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함을 설명해주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국민들이 인감증명이나 계약서를 발급할 때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지문날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문날인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서 유발되는 것일 뿐이다. 참고로 경찰은 헌법소원 초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지문날인제도를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설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지문날인제도의 존립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설문이 이루어지던 당시는 1999년 9월 초로서(조사는 9월 6일, 기사는 9월 7일자)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비판이 겨우 그 모습을 드러낼 때였고 당시까지도 일반 시민들에게 이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시기였다. 당시의 통계에서도 범죄수사 등의 이유로 찬성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68%에 이르렀으나 이들 역시 날인은 하지만 꺼림칙한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86% 이상에 이르렀음을 경찰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 후로 3년이 흐른 현재 일반 국민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2002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찬반논쟁에서는 50 대 50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었으며, 8월 9일의 라디오 프로그램(라디오 정보센터)에 참가한 청취자들 역시 거의 반반의 수준으로 찬반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의식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러한 야만적인 제도를 마치 스스로 원해서 따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7. 경찰청은 자신들의 지문감식 통계자료와 더불어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용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수 대비 신원확인실적은 저조”(경찰청 홈페이지)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추가 의견서에서는 마치 지문감식이 만능의 수사자료인 것처럼 확대 과장하고 있다. 또한 신원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마치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다른 수사방법들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율 등을 운운하면서 지문감식이 가장 훌륭한 수사방법인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 통계자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1년도 지문감식확인 건수가 4,000여 건에 불과한 반면 유전자 감식건수는 11,551건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감식의 경우 전국민의 유전자정보를 사전수집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높은 감식건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전국민의 지문정보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문감식확인 건수는 유전자정보확인건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경찰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 문제는 전국민의 신체정보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이고 치밀한 수사가 진행되는가가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열쇠임을 경찰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수사관행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과학적이고 치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죄 없는 국민의 신상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님을 자신들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경찰은 가감없이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애써야 할 공복인 대한민국 경찰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자료의 의미까지도 왜곡해가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검토문에서는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의 법적근거라던가 합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부연을 피했다. 이미 이 주장들은 근거 없는 것이며 경찰의 주장은 강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의 근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기록들을 교묘히 왜곡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경찰이 보여주는 대단히 파렴치한 작태이고, 이러한 경찰의 왜곡논리로 인하여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에 의해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검토를 수행하였다.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지명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본인의 성명과 직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개인에게 안겨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한 노동자가 수배전단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희롱범죄자가 되고 사기범이 되었다. 도대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토록 몰상식한 행위를 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3월 2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지명수배하면서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경찰의 작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3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전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후속 책임조차 지지 않음으로서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그토록 우려하던 사태를 현실로 나타나게 하였다.

경찰 스스로도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국민통제장치인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적절한 제한조치 없이 무한정 남용됨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경찰은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적법절차의 원칙까지도 무시하고 일반적 수사관행조차도 무시한 채 국민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노출시킴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무제한도로 파괴하는 초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파괴된 한 사람의 인격과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경찰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킴으로서 발생한 초유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관계자

를 문책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한편, 무분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야만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찰의 물지각한 행위에 다시 한 번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경찰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즉각 검토하라!

2002년 10월 11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락: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전화 000-000-0000 이메일 nojisimiya@hanmail.net)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문화·NGO 담당 부서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제 목 봉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날 짜 2001. 10. 28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0월 26일 10월 26일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소위 '성남 봉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함께 추적조사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이 사건의 조사결과와 해결과제를 발표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3.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1] 봉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별첨2] KBS 9시 뉴스 : 노점상 봉투로 새는 개인 정보

[별첨3] SBS 8시 뉴스 : 공공기관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각

[지문날인 반대연대]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별첨1]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조사한 “성남 붕어빵 봉지 사건”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공공기관과,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고 영업과 관계된 고객의 거래정보를 보호해야할 금융기관들이 국민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으며 얼마나 안일하게 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으로서 우리를 충격과 당혹 속에 빠트렸으며 분노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 중차대함으로 인하여 SBS, KBS 등의 거대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기에 이르렀고, 10월 26일에는 각각 8시 뉴스와 9시 뉴스를 통해 크게 보도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하였으며 방송사의 뉴스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있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사건이 단지 애초에 중요한 문서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이나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빵 봉지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으로만 축소되어 한 번의 보도로 마무리되는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보다 상세한 사건의 내막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의 해소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수집문서의 내용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수집한 증거물은 공공기관의 문서가 12종, 금융기관의 문서가 3종으로 총 15종에 이르렀으며, 수집하지 못했으나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문서들 역시 매우 많은 종류가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문서들까지 합치면 그 종류나 분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의하여 수집된 공공기관의 문서는 “세대현특수주소레코드대장, 일일처리현황(집계표), (전출입관련)일일처리내역, 자료수신내역, 자료송신내역, 통합공과금체납수용가내역서, 조정 및 수납.미수 집계표, 조사대상필지부(지가조사부), 토지특성조사표,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사표” 이상 12가지 종류이다. 한편 수집된 금융기관의 문서는 “신용카드 발급대장,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서, 기한부예금만기도래명세(잔액 100만원 이상)” 이상 3가지 종류이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공서 유출 문서의 경우 일일처리현황(집계표), 통합공과금체납수용가내역서, 조정 및 수납.미수 집계표, 토지특성조사표(총 12종 중 4개종)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문서였으며,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의 경우는 신용카드발급대장(추정)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관공서에서 유출된 문서 중 일일처리현황(집계표), 조정 및 수납.미수 집계표, 토지특성조사표는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자료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았다. 위에 언급된 문서 이외의 나머지 문서는 모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는 한 개인의 정보가 무려 8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사표”는 한 가족의 정보가 33가지 항

목으로 나누어 기록되고 있었다. 또한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에는 소유토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2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었으며, “조사대상필지부(지가조사부)”는 32가지 항목에 걸쳐 해당 토지에 관계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의 경우는 기록 항목은 공공기관의 문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내용은 만일 이 사실이 악의로 이용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문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개인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의 경우 채무가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부상의 연락처, 실제 연락처, 현재 추심상황, 최초 연체일, 직장주소나 전화번호, 미환급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한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로 모두 13개 항목에 걸쳐 기록상황이 소상히 나와 있었고, 문서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 더 많은 개인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물이 확보된 문서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였는데 미처 수집하지 못한 문서들 중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을 갖춘 문서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교육청에서 나온 문서, 세무서에서 나온 문서 등 온갖 관공서에서 나온 문서에는 개인의 교육경도와 각종 세금에 관계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나온 문서들 중에는 개인의 신용정보, 예금거래내역 등 온갖 정보가 다 들어 있는 문서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기되는 의혹들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이러한 구체적 사실은 모두 제외한 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것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도가 나간 부분보다는 그 외에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잠복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일대 관공서에서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단체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회’ 등이었고, 이 가운데 시흥시에서 유출된 문서는 ‘재향군인회 경기도 재향군인회 사업소’가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가 시흥시에 문체의 문서를 용해처리하였다고 보고한 날짜는 지난 6월 7일로서 최초 제보자가 붕어빵봉지를 발견한 10월 21일과는 무려 4개월 이상이 차이가 났다. 여기서 첫번째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한다. 이 중간 기간동안 과연 이 문서들이 모처에서 그냥 보관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중간과정을 또 거쳐 봉지제작공장까지 흘러간 것인가? 중간과정이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적이 있는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확인되어야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용해)업체의 문제인데, 시청에서 입수한 폐기문서용해일지를 보면 용해장소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라는 용지재활용전문업체로서 전주에 위치한 공장이다. 그렇다면 ‘경기도 재향군인회 사업소’에서뿐만 아니라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에서도 용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일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문제는 유출된 문서가 공공기관의 문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만큼이나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기록 문서들이 엄청나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계

좌번호와 잔액내역이 들어있는 문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추심상황이 소상하게 기록된 문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공공기관의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사기업에서 유출된 이러한 정보를 회수하고 제지해야 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었다.

네 번째로 제기하는 문제는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흥시청 관계자의 이야기는 공공기관에서 폐기하는 문서 중 일부는 폐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데 이 위탁계약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부기록보존소'가 일괄하여 체결한다는 것이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시청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기록보존소가 과연 위탁업체의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현장 지도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책임의 문제가 그렇게 해야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기록문서들이 경찰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혀 수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청 관계자의 말로는 어느 만큼의 양이 어느 범위만큼 흘러나갔는지 몰라 수거작업을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수거를 하는 동안 수많은 개인정보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봉지 한 장에 10원씩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상의 의혹을 완전해소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다만 '경기도 시흥시청', '재향군인회 경기도지회' 이 두 단체간의 문제일 뿐인가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기업과 이들로부터 폐지를 위탁받아 처분하는 처리업체들 중에 이처럼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유출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우리는 감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정부부처는 이상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앞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경찰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단순히 책임자 파악 선에서 끝낼 수 있으며 우리가 제기한 위의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자신들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커다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조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찰들과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개인정보문서들의 회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수사종결 운운하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국민이 어떻게 공공기관을 믿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사건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성남 봉어빵 봉지사건"에 대하여 의혹없는 조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확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별첨2] KBS 9시 뉴스 : 노점상 봉투로 새는 개인 정보

●앵커: 시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관공서의 서류들이 노점상들이 쓰는 봉투로 만들어져서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운섭 기자가 그 유통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노점상이 종이봉투에 봉어빵을 담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봉투 겉면에 시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가 낱알이 기록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시청에서 취급하는 과세내역서로 음식 봉투를 만든 것입니다. 노점상인이 종이봉투를 구입했다는 도매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등록 대사표 등 공문서로 만들어진 봉투몽치가 판매용으로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봉투도매상 주인: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제조공장이 있어요. 주로 군고구마, 군밤 장수들이 사는 거죠.

●기자: 봉투 제조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이미 자리를 비웠지만 관공서 서류로 봉투를 만든 흔적이 역력합니다. 굳게 잠긴 공장 문 앞에는 봉투의 재료로 쓰인 민원서류들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 등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속속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지난 봄 경기도 시흥시청으로부터 폐기용 공문서 처분을 위탁받은 재향군인회 경기사업소가 처리를 소홀히 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처리를 맡은 단체 관계자는 이 문서들을 규정대로 소각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채 봉투 제조업체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시흥시청 담당 과장: 그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는 거니까 이걸 전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죠.

●재향군인회 관계자: 중간에 (화물차)기사 한 명이 욕심을 부리고 유출시켜서 우리도 황당합니다.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상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문서 유출 피해자: 지금 황당해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걸. 문제를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자: 허술한 공문서 관리로 인해 새나간 개인정보들이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KBS뉴스 정운섭입니다. <끝>

[별첨3] SBS 8시 뉴스 : 공공기관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각

<앵커>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단돈 10원에 나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온갖 개인정보 자료들이 10원짜리 봉어빵 봉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정유섭씨는 집앞 가게에서 봉어빵을 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심코 받은 봉어빵 봉지가 동사무소에나 있어야 할 주민등록표로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봉지들도 살펴봤다가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유섭/회사원] "주민등록번호만 나오게 아니고 카드번호, 대학 입시지원명부 등 너무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 것도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봉어빵 봉지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본적과 호주, 병역자료, 출생이후의 주소변경사항 등 한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목록이 정리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과 내역서까지 있습니다. 잘못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이 봉지를 만든 공장을 찾아가자 각종 서류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각종 서류들이 이렇게 공장 입구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규정상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은 완전 소각하거나 폐지하도록 돼 있지만 폐지로 팔려서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봉지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한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박창규/시흥시 정왕동]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이 이렇게 나돌아 다니면, 정부를 어떻게 믿고 개인정보를 맡기겠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관청은 규정대로 폐지로 분류해 처분했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이용석/동사무소 주무]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각동, 실 과 등의 한꺼번에 문서를 모아서..."

[최재백/시흥시청 자치행정과장] "아니, 동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걸 우리에게 보내주면 안되니까요"

행정 관청이 무책임하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 수만명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10원짜리 봉어빵 봉지로 둔갑해 거리에 나돌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끝>



연락: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전화 000-000-0000 이메일 finger@jinbo.net)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 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7살에 동사무소에서 십지지문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 십지지문은 현재 주민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되어 임의로 수사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이것이 수집목적을 넘는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2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경찰과 행정자치부에 이에 대한 폐기와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네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4.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1월 21일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애초에 알려드렸던 데서 기자회견 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 :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1.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
2. 청구의 의의(1) : 이종희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3. 청구의 의의(2) :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4. 청구의 동기 : 안승혁 (프리챌 '지문날인반대자모임')
5. 성명서 낭독 : 고팡민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6. 청구서 접수 (행정자치부)
7. 청구서 접수 (경찰청)

[별첨1]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서 - <공공문서에서 확인>

[별첨2] 성명서 :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별첨2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목적조차 분명하지 않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진 채 살아왔다. 쿠데타로 집권한 권위주의 정권이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만회하고 자신들에게 겨누어지는 국민적인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고자 채택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이후 계속되는 유신정권, 신군부 쿠데타 정권을 거치는 동안 더욱 공고한 형태로 강화되어왔으며, 현재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지문이라는 말을 주민등록법의 한 구석에 삽입함으로써, 야만적인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지문날인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망신거리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여왔다. 특히 1999년 주민등록증 일체 갱신 및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과 때를 같이하여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에 반대하는 초유의 저항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열 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이첩받아 임의로 수사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한 편, 온라인을 통해 거부를 밝힌 사람들이 이 시간 현재 1930명을 넘고 있을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강제적인 십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민에게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마저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한낱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국민을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와 부당함을 해소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보제공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십지문원지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률의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채취한 지문을 그것도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굳이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고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 전체를 범죄자취급 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도의 개선

은커녕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욱 강화·확대하려는 공공기관의 행위는 과연 이들이 국민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국민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당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한 것이고, 그러한 날인행위조차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과정이었을 뿐 날인된 십지문원지를 경찰청이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경찰청이 국민의 십지문원지를 가져가 보관하고, 이를 디지털정보로 전환시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 거론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일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체 중단되어야 하며, 십지문원지를 당장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하고, 십지문원지를 이용한 지문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십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라!
- 즉각적인 폐기가 불가능할 경우 십지문원지를 정보주체인 각각의 청구인에게 반환하라!
- 경찰청에 보관·저장 중인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즉각 삭제하라!
-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 효과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제도 철폐하라!
- 불합리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과도한 정보의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의 기관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하라!!

2001년 11월 21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첼모임, 진보네트워킹센터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NGO·문화담당 기자)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에 대한 취재·보도 요청
 담 당 윤현식 전화 000-000-0000 이메일 finger@jinbo.net
 매 수 6장
 날 짜 2002. 5. 20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년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기자회견 : 5월 28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오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 사용을 제안하는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셔서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 <별첨> 1. 성명서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2. 자료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3. 관련기사 : 인권하루소식 2002년 5월 18일자 논평

사회진보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성명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시작하며 -

지문날인이 시작되고 30여년이 흘렀다. 1968년 김신조의 북한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한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지문날인은 이제 정말로 없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 지문날인은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시작된 파시즘의 잔재이며 아직까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유린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망자를 확인할 때 지문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문날인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관련이 없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이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1%도 지나지 않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 범인 검거나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채취된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이 국제적인 비난 여론으로 재일외국인 지문날인을 폐지한 것이 1999년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문날인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우리 정부나 언론들은 막상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어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이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이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

지문날인은 우리 안에 각인된 파시즘이다. 지문날인은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원흉이다. 우리는 오늘 지문날인을 철폐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하자. 만일 신분증이 없다면 정부가 우리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자.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체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이 철폐되기를 바라는 이 사회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또 동참해줄 것을 믿는다. 지문날인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2년 5월 20일

사회진보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왜? ■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변변한 토론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만 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일정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했던 제도는 국제비판여론이 거세어지면서 47년 만인 지난 1999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나서 제일한국인의 지문날

인을 강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모순적이라 할 것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흔히 알려진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문 대조 수사는 너무 널리 알려진 기법이어서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통제수단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또한 국민은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국민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가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역치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모르기 때문에?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미래사회에 머리에 바코드가 새겨져 매순간 감시되는 인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이 아닙니다. 지문과 주민등록정보는 매우 상세한 개인의 신상 정보들에 국가가 접속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바코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입니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가장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프라이버시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 ■ 어떻게? ■ ■ ■

지문날인은 우리 안에 각인된 파시즘입니다. 지문날인은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원흉입니다. 지문날인을 철폐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행 등) 제2항)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한국은행 포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 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은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현행 대한민국의 신분증 제도는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양심과 사상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이 신분증이 없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02) 3703-4860 팩스 02) 3703-5544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02) 503-2790 팩스 02) 503-1539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2년 5월 18일자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다시 찍어야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이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로선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법자로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도 곧바로 공민권을 회복하는데, 유독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평생 공민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그나마 진전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신분증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행자부는 여전히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한 위치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듯,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대체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그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끝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제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 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 ※ 기자회견 : 7월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보 도 자 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일어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맥을 이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6.13 지방선거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질의에 답하면서,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각급 동사무소에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신분 증명을 요구하자 행정자치부와 동사무소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여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4.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서울시청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를 취재·보도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끝.

지문날인 반대연대

[기자회견자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지문날인 없는 참정권을 원한다”

※ 기자회견 : 7월 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1. 개회, 기자회견 취지 설명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2. 헌법소원 개요 (윤현식/ 소송당사자, 변호사)
3. 지지와 연대 발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참정권연대)
4. 기자회견문 낭독 (김한울/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5. 질의응답

기자회견 이후 계획

1. 행정자치부 앞 1인시위 (향후 매주 화요일 1인시위)
2. 헌법소원 제출

[별첨]

1.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공공문서에서 확인>
3. 기자회견문

지문날인 반대연대

[자료]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왜? ■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지문날인을 도입하고 나서 34년이 흘렀습니다. 지문날인은 과시즘의 잔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거부한 선언자가 2천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부분의 신분증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

증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정권 행사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변변한 토론 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했던 제도는 국제비판여론이 거세어지면서 47년 만인 지난 1999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나서 제일한국인의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모순적이라 할 것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흔히 알려진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문 대조 수사는 너무 널리 알려진 기법이어서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통제수단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 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또한 국민은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게 대한 모든 정보, 하도 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국민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모르기 때문에?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미래사회에 머리에 바코드가 새겨져 매순간 감시되는 인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이 아닙니다. 지문과 주민등록정보는 매우 상세한 개인의 신상 정보들에 국가가 접속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바코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입니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가장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프라이버시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은 마땅히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에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신분증 제도는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양심과 사상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02) 3703-4860 팩스 02) 3703-5544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02) 503-2790 팩스 02) 503-1539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마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사례 발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없이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집중행동]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본인의 주소지 소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장해준 신분증명 방법이자 동사무소가 최초의 국가신분증 발급기관인 만큼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분 증명을 거절했습니다.

1. 5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직원은 선관위에 문의한 후, 선관위 공문(문서번호 지도 3001-502)에 의거하여 등본을 발부하려 하였으나, (사진을 붙여서 직인까지 찍어서 발부하기 직전에) 동사무소 간부가 행정부에 문의하여야 한다며, 발급을 중단시켰고, 행정부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읍면동장 위임)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귀하께서 요청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는 그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또한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6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동사무소에 도착하여 지문날인을 반대하여 주민증을 발급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진을 첨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신청했습니다.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담당 최윤희 전화731-1638)"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을 들어 보이며 마침 오늘 아침에 그런 근거가 없는 증명서는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고 다시 한 번 거절 했습니다.

3. 6월 11일 서울시 삼청동 동사무소 방문했습니다. 물론 발급거부당했지요. 동사무소에서는 먼저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식의 신분증명은 선례가 없으니 해주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이제 선례를 만들어보라며 내려받은 중선관위 답변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이 신분증명을 해주다면...그것은 상급기관인 행정부의 (실질적)입장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그러한 신분증명 자체는 주민등록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에 다름아닌 것이 아니겠느냐며...발급을 거부하였답니다.

저는 여권도 갱신을 안해서리...여권도 안되구...다른 것두 대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네여... 뭐 굳이 대체할 신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날인거부를 하는 사람들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명하구 투표하면 되지.. 하는것은 적극적인 주민증반대의 의사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4. 저는 부산에 사는 ... 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저에겐 이또한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던 중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분들이) 겪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선관위에 전화를 하여 이를 문의하였는데, '상급선관위와 동사무소에 질의와 문의를 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하기 위한 본인의 질의와 문제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간의 어떠한 상호의견 교환과 업무협조 등의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지역선관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이를 가지고 다시 행정자치부에 위의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행정자치부의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증명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 공문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 증명서로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으면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이를 다시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기관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분증명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고 하여 거부한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전 대구에 거주하는 지문날인거부자입니다. 예상했듯이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은 신분증명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이나 지침을 연락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발급을 해 줄 수 없답니다.

중선관위 공문을 보여주면서 중선관위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라 했죠. 중선관위에서는 사진을 첨부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체신분증이 발급가능한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지 않냐고 물으니 여하튼 대체신분증을 가져오면 신분증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이더군요.

6. 6월 12일에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업무하는 분께 선관위 공문을 가지고 가서 신분 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발급이 불가하던 입장을 들었습니다. 돈암2동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성북구청으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은 상태더군요. 내일 투표를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이네요.

7. 6월 12일에 남양주시 도농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선관위 공문을 보여주며 서류를 발급해서 참정권을 보장받게 해달라고 하니 MBC 뉴스를 봐서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발급 근거가 없는 서류라 발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대장 등 다른 서류의 사본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없는데다 (사본이라 하더라도) 공문서 유출이라서 발급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보의 주체인 내가 나에 대한 정보만 적혀있는 서류를 왜 못받냐고 항의하였지만 역시 답은 같았습니다.

결국 발급거부 확인서 등 발급이 거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니 다른 분들도 받아오신 것과 같은 내용의 남양주 시청의 공문을 복사해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잠시 후 남양주시청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셨습니다. 선관위 공문과 남양주시청 공문을 함께 보여주면서 지문날인 거부 사실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더니 역시 MBC뉴스를 봐서 알고 있다고 하며 선관위에서는 최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나 행자부에 대해 어느정도 강제할 수 없으니 현재로선 대책이 없다고 하더군요. 선관위는 유권해석으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한 것이고 나머지는 행자부의 문제이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절차상의 문제를 따로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다만, 대체신분증이 없다면 내일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대체신분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사무소 혹은 시청 혹은 행자부 측의 책임을 물으며 법적 대응이나 인권위 제소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투표권 문제도 사실 2층까지 휠체어를 들어다 올려줄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투표 절차가 보장되느냐 마느냐로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8. 저는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체 신분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6월 13일 14시 30분경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앙선관위 질의 회신'을 근거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공휴일이라서 동사무소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일반적 공휴일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선거관련 담당자가 와서는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는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인 관계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개인신상카드 사본이나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투표구에서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요구에 담당공무원이 응해서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참고 : 참정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선거법은 지키려 하느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주민등록법은 여기는 것이 없다. 단지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뿐이다. 범법자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 6월 10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동사무소에 신분증명 발급 요청을 했으나 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행자부 답변 대로였습니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현재 어떠한 신분증도 없는 상태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처음에는 신분확인이 안된다고 하다가, 제가 일전에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부착된 서류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신분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준비한 사진과 함께 제차 요청했더니 예의 행자부 답변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임시로 발급해주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는 그럼 발급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발급된다는군요. 발급근거에는 법,시행령,행자부 지침 등과 같은 것에 명시되어있다는 뜻이라더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동사무소 직원이 잠깐 언급한 내용 중에 아주 오래 전에 선거시에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것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었노라고 하더군요... 그때의 발급근거가 행정지침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월 13일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표 복사 혹은 대여, 동사무소 직원의 투표구까지의 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나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습니다. 동사무소가 투표 장소로 사용되고있었고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 업무에 메달리고 있어서 대화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투표구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식의 태도로 상당히 비협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기도 했으며 이 와중에 투표를 관리하는 쪽에서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의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프린트하여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가 프린트된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계속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곳 선거관리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담당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서야 그 직원과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와 같이 나와 같이 주민등록표를 들고 투표구까지 가서 신분확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중간에 경찰관의 중재, 또 선거와 관련한 형사들도 찾아와서 중재를 했으나 그 공무원은 여전히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시 48분경 그 공무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오늘(6/13)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10. 6월 13일에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동사무소를 방문. 발급이 될 것도 같았는데, 결국 옛날 주민증으로 투표하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선관위 공문을 보여주고 신분증명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오기 전에 공문을 보던 분이 옛날에는 등본에도 사진을 붙인 적도 있긴 했는데 요즘은 주민증 발급신청을 하면 바로 임시로 쓸 수 있는 걸 발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안만든다고 하더군요. 나쁜 놈들이 악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면서요. 대신에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하루 전에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담당 공무원이 와서는 선관위 공문을 보고서 이런 것은 발급이 안된다고 얼마전에 위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복사해주고 주민등록대장을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유출이 안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복사도 안되면 같이 가서 신분을 확인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공문을 본인이 직접받은 것이냐(내 대답 : 아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냐(내 대답 : 그렇다) 물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주민등록대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주민등록대장의 제 서류를 복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와서 제게 뭘 가져왔나길래 사진 2매를 가져왔단니까, 옛날 주민증은 있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주민증까지 같이 복사를 해오더군요. 제 생각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주민등록대장의 제 서류 복사본에 옛날 주민증 복사본을 첨부해서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더니 결국 안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더군요.

전화를 끊고서는 제게 옛날 주민증만 다시 돌려주며 그걸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알아본 것이냐고 물어보니 지역 선관위에 확인한 거라면서 제 주소를 확인하고서 투표장소를 안내해준 뒤 그곳에 자신이 미리 전화를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옛날 주민증 가져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11. 저 또한 주민등록대장 사본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신원확인증명서 요구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례가 없으며 그렇게 해주기시작하면 주민등록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면 절대 불가하다 하더군요.

몇차례 이야기가 오고가고...여전히 그들의 입장은 강경하고... 그래서 저는 거부사유를 문서로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해야겠기에 기한만료된 여권, 도서관증, 옛학생증 등등...을 잡다하게 늘어놓았저. 껌... 결국 여권으로 신분확인하고 투표했습니다. 여권있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나카면서... "세상 참 힘들게 사시는군요"라고 야그하더군요...

12. 저도 지문날인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동사무소를 찾은 때는 6월 11일 오전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자체 선거 때 투표하고 싶은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도 없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의 공문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것을 발급해 주면 선관위에서는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 신분증을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동사무소 계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장에게 지금 지문날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없는데 선관위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것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선관위의 공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장은 제 사정을 딱히 여긴 듯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저만 특별관리하면 되지 않겠냐며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그런 신분증 만들기도 그렇고 그날(13일 투표일) 오면 투표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의 투표날, 저는 오후 3시경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직원이 오더니 저를 투표장에서 신원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하는 사람에게 미리 제작해 온 주민등록등본에 제 복사사진을 붙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저를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분증없이 신원확인이 됐고 투표할 수 있었죠. 저는 너무 기뻐지만 아쉽게도 그 대체신분증을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제 신원확인만 해 주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갔으며 이후 투표장 안쪽에서 계속 사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웠지만 일단 신분증없이 투표했다는 사례만으로도 큰 성과라 생각하고 투표장을 떠났습니다. ■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정자치부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4874 / 전송 (02)3703-5544
지치행정국 주민과 과 장 노명찬 사무관 김충일 담당자 백용업

문서번호 주민13207-540

시행일자 2002.05.13 (5년)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제 목 신분증명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증명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요청내용]

가.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의 양식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고 동사무소의 압인을 압날하여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 이와 같은 내용을 각급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처리하여 신분증명서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양식용 사진을 첨부하여 압날함으로써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있으면 아울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읍면동장에 위임)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제18조), 귀하께서 요청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는 그 발급 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



[결의문]

국가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참정권 박탈을 규탄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지문날인국가인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여 앞둔 지난 4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 선관위는 여러 대체 신분증과 함께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서류가 인정됨을 확인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여 결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의 신분증명은 국가의 책임이다. 신분증명 없이는 투표도 할 수가 없다. 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의 신분을 증명해 줄 곳은 당연히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동사무소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책임을 포기하였다. '사진을 첨부해서 오면 된다', '발급근거가 따로 없다', '선관위로 문의하라', '선관위로써는 어쩔 수 없다'. 무려 두 달 전부터의 대책이 요구되었음에도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한 행정부와 선관위에 의해 지문날인 거부자의 지방선거 투표는 좌절되었다. 행정편의주의가 국민기본권에 우선하고 만 것이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양심에 따른 합법적인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당했고, 양심의 자유마저 모욕당하였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지문날인 거부자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지문날인제도는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미명 하에 군사독재정권의 국민통제와 체제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감시와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국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표본이며, 파시즘적 장치의 전형이다. 따라서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반대는, 다른 무엇도 아닌, 국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이자, 국민 관리주의, 국민 통제주의, 국가 파시즘에 대한 반대이다.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지문날인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체 신분증, 대체 신분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만은 금지된 것들이다. 참정권뿐만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권리들마저도 지문날인 거부 때문에 박탈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다시 한 번 두 기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증명 책임을 포기해버린 행정자치부와 유권해석 외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나아가 행정부 화요 1인 시위, 신분증명 거부 자치단체 항의 방문,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에 대하여 지문날인거부자의 참정권 보장과 신분증명의 책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명백히도,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라는 두 가지 답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다.

2002. 7. 23.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인권·사회 담당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담	당	윤현식(토론회 기획자, 011-202-9097), 이마리오(일본 발표자 섭외자,
매	수	2장
날	짜	2002. 8. 21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단체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다
※ 8월 27일(화)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된 국가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7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했던 바 있지만 끊임없이 재론해 왔으며, 특히 얼마전 KT에서 전자주민카드나 전자건강카드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카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8월 5일자로 새로운 주민기본대장법과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주기네트)이 시작되면서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하여 국민기본권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토론회를 오는 27일 오후4시에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되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방한하는 일본 활동가들은 토론회 당일 낮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세종로 행정자치부 앞에서 한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매주 진행하는 지문날인 반대 1인 시위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별첨]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취지

얼마전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대국민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필요하겠지만,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아 왔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40년 전에 도입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세계에 유래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채취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된 국가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7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했던 바 있지만 끊임없이 재론해 왔으며, 특히 얼마전 KT에서 전자주민카드나 전자건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카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8월 5일자로 새로운 주민기본대장법과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주기네트)이 시작되면서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9.11 테러사건 이후로 전자지문과 전자 홍채 등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국가신분증명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하여 국민기본권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함께 토론했다. 과연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국민기본권을 넘어설 수 있는가?

2. 개요

- 일시 : 2002년 8월 27일(화) 오후4시~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시청 옆, 전화 02) 2125-9700)
- 주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21 인권사업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킹센터

3. 내용 <사회> 이재승 (국민대학교 교수 / 법학과)

- <발제>
- 1)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 법학과)
 - 2) 한국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 김기중 (변호사)
 - 3) 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 ... 이타가키 류타 (ITAGAKI RYUTA, 반감시 네트워크)

- <토론>
- 1)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 2) 타카시 시라이시 (TAKASHI SHIRAISHI, 프라이버시 액션)
 - 3)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한국현대사)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신: 인권·사회 담당
 발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목: 한일 공동워크숍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열린다
 담당: 윤철식 (지문날인반대연대, 011-202-9097), 홍성태 (민교협,)
 매수: 3장
 날짜: 2002. 11. 6

※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한일 공동워크숍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일본인 활동가들 방한, 지문날인반대 퍼포먼스에도 참여
 ●퍼포먼스: 11월 9일(토) 낮12시 / 대학로 (4번출구)
 ●워크숍: 11월 9일(토) 낮2시 / 성균관대학교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한 데 대해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화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11월 9일(토)에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방한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양국의 국가신분제도에 대하여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숍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은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지문날인반대연대(이상 한국측), 반주기네트연락회(일본측)에서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이에 앞서 오후12시에 대학로에서는 일본 활동가들과 한국의 활동가들이 함께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갖습니다.(4번 출구, 베스킨라빈스 앞)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한일 공동 워크숍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안내

[별첨]

한일 공동 워크숍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1. 취지

한국의 국가신분등록제도, 특히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아 왔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40년 전에 도입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전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열손가락 지문채취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민기본대장법이 최근 큰 폭으로 개정되고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서 이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이에 따른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의 도입을 주민의 선택에 맡긴 요코하마(横浜)의 경우 350만 주민 중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만 84만에 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거부자도 역시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내년부터 IC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형 국민신분증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도 문제시되어 왔던 외국인등록제도와 아울러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9 11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보수우경화정책과 이에 편승한 국가의 주민통제시스템 구축 작업은 개별국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각국이 생체정보를 도입한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을 공언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나라들이 국가신분증명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위험한) 비-국민", "선량"하고 "우수"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나 "테러리스트", 그러한 자의적인 분란을 도모하는 국가감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회구조의 근간이 되는 개인을 말살하고 연대를 분단시키며, 전체 속에 개인을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지문날인 반대연대, 그리고 일본의 반-주기네트연락회를 자국 내의 주민통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 있는 많은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2. 제목

한일 공동 워크숍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3.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지문날인반대연대(이상 한국측), 반주기네트연락회(일본측, 反住基ネット連絡會)

4. 일정

2002년 11월 9일(토) 오후 2시~5시

5. 장소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별관 62805호

6. 진행

<제1부> (13:00~14:20)

- 사회 : 진영중 (교수, 성공회대 영문과/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1) 인사말 (통역시간 포함 각 10분, 13:00~13:20)

- 한국 : 박상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일본 : 시라이시 타카시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2) 발제 (통역시간 포함 각 30분, 13:20~14:20)

- 전자정부의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유통의 문제점 및 주민통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제한문제

: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주민통제장치강화의 현실과 시민들의 대응 및 과제

: 시라이시 타카시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휴식> (14:20~14:30)

<제2부> (14:30~17:00)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3) 토론 (통역시간 포함 각 20분, 14:30~16:00)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장)
- 김주한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미야자키 토시로 (젓어라! 주기네트 시민행동)

(4) 전체토론 (16:00~17:00)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인권·사회 담당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제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담	당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011-202-9097)
매	수	2장
날	짜	2002. 11. 21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제2차 한일 공동워크숍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참석차 제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 오는 11월 23일(토) 오후 1시 건국대 본관
화상회의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1월 9일 진행했던 제1차 한일공동워크샵에 이어 아래와 같은 제2차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일교포 1세대로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일본 내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에 앞장서셨던 한중석씨가 방한하여 참석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일본에서의 지문날인제도철폐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생생하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의 철폐 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 래 ---

- 제목 : 제2차 한일공동워크샵 :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일시 : 2002년 11월 23일 (토) 13:00~14:00
- 장소 : 건국대학교 본관 화상회의실
- 참석자 :
 - <한국>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인권사업팀
 - <일본> 쿠사카 미치추네 (오사카 : 국민등록번호제도에 반대하는 연학회), 사토 우 분메이 (토교 : 주민관리제도 연구자), 한중석 (토교 : 제일동포1세,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카미쿠라 마코토 (나고야 : 일용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광진웅 (오사카 : 제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사무국장)

3. 한중석씨 인터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윤현식(011-202-9097) 활동가에게 연락을 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송관련 공공문서

- 990901 [문서] 지문날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011121 [문서]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서
- 011130 [문서] 십지지문원지 반환 및 십지지문 디지털자료 삭제 청구회신
- 020130 [문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
- 020513 [문서] 십지지문 반환및폐기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 020801 [문서] 십지지문행정소송 소장
- 020802 [문서]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021113 [문서] 십지지문원지 소 판결문
- 021113-2 [문서] 십지지문원지 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문
- 0105** [문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소장
- 020718 [문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
- 021015 [문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거부처분 상고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서
- 020724 [문서] 참정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020822 [문서] 열린채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020830 [문서] 경범죄법 1조 42호 위헌제청결정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99. 9. 1.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헌 법 재 판 소 귀 중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1. 오 창 익
서울 용산구 한남2동 0의 0
XXXXXX-XXXXXX
2. 홍 석 만
서울 용산구 갈월동 0의 0
XXXXXX-XXXXXX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27-1 금호팰레스빌딩 5층(110-541)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정보통제권),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제37조 제2항

침해의 원인

경찰청이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3,600여만명에 달하는 17세이상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며 지문수집목적 외 벗어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위와 같은 범죄수사목적 외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전산처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청 구 이 유

1.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 오창익은 사회운동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청구인 홍석만은 사회진보연대의 실무자로서, 1999. 6. 초경부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한 지문날인반대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문날인반대운동의 과정에서 경찰청이 아무런 권한없이 지문을 보관하고 그 지문을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며 나아가 보관하고 있는 지문을 전산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2.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기간의 준수

가. 청구인들은 경찰청의 지문보관 및 범죄수사활용 등의 행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나, 이를 시정할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 경찰청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된 지문을 보관하고 경찰행정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오래 전의 일인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이 사실은 비밀에 부쳐져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경찰청의 위헌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것은 이번에 유력한 사회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문날인거부운동이 벌어지면서 경찰청이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사의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때문이었습니다.

다. 경찰청은 1999. 7. 16. 첨부서류와 같은 보도자료("경찰청, 현행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 존속입장 표명")를 내고 경찰청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되어 있는 지문을 보관하여 그 지문을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종합중앙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은 같은 달 13. 지문날인거부운동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지문을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같은 신문은 같은 달 19.자에서 "주민증 대상 만17세이상 열손가락 컴퓨터입력, '지문전산화' 인권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이 1990.이후 만17살이상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컴퓨터에 전산입력해 왔으며, 현재까지 만17살부터 33살에 이르는 남자 800만명, 만17살부터 27살까지의 여자 370만명의 열 손가락 지문을 이미 전산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헌소원청구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합니다. 한편 청구인들은 모두 만33세이하의 남자이므로, 경찰청이 청구인들의 열 손가락지문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고, 청구인들의 열 손가락지문을 모두 전산입력하여 둔 대상자로서, 이 사건 위헌소원의 청구인적격도 갖추었습니다.

3. 위헌인 이유

가. 주민등록,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역사

(1) 현행 주민등록의 역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1942. 9. 26. 조선기류(寄留)령(제령 제32호)와 기류수속규칙(조선총독부령 제235호)을 공포하였습니다. 기류법 이전에는 신분등록제도만 있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신분등록제도만으로 신분관계확인 과세처리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류법의 내용은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府邑面(조선호적령에 의하여 호적사무도 부읍면에서 했음)에 비치한 기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류에 관한 사항은 제출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나, 기류에 관한 제출을 해태한 자는 1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⁴⁶⁾. 이 조선기류령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새로운 거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최고입법회의는 1962. 1. 15. 조선기류령과 별 차이가 없는 기류법(법률 제967호)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1962. 5. 10.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을 제정, 공포되면서 기류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지하였습니다. 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현행의 제도처럼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관리'라는 형식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일적인 국가거주민등록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구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조), 기류법과 달리 '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할 때에도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6호, 제10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 개정내역을 보면, 1968. 5. 29.의 1차개정(법률 제2016호)때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970. 1. 1. 2차개정(법률 제2150호)은 주로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1975. 7. 25. 3차개정(법률 제2777호)으로 주민등록증 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와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1977. 12. 31. 4차개정(법률 제3041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편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991. 1. 14. 7차개정(법률 제4314호)으로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이해관계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3. 12. 27. 8차개정(법률 제4608호)으로 주민등록사무의 전산처리에 따라 전출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7월이 내로 연장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증 제도는 제정 주민등록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1968. 5. 29.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때 도입되었습니다⁴⁷⁾. 이 개정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

46) 김병유, "주민등록제도의 의의와 연혁 개관", 사법행정, 1997. 7., 103쪽

47) 1968년은 1.12.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국가안보론이 팽배한 한 해였다. 당시 정부와 공화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야당인 신민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치적 목적이용 우려

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급을 강제하지 않았으나⁴⁸⁾, 1970. 1. 1. 주민등록법 제2차 개정에 의하여,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개정이유중 일부), 시장 또는 군수에게 18세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경찰관에게 간첩의 색출·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1975. 7. 25.의 3차 개정때에는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17세로 낮추면서, 17세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사법경찰관에게 간첩의 색출·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77. 12. 31.의 4차 개정때에 '드디어' 주민등록증의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형벌규정을 신설하였고, 1980. 12. 31.의 5차 개정(법률 제3330호, 국가보위입법회의 개정법률임)때에 17세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등록증 제도가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3)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1968. 12.경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주민등록증과 함께 도입된 것인지는 법률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에 관하여, 1970. 4. 10. 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과 엄지손가락의 경우 평면 지문 외에 회전지문을 찍도록 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국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는 1970. 4.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문날인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만17세에 달한 자입니다. 만17세에 달한 자는 주민등록증 발급담당공무원에게 가서 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 및 엄지손가락의 회전지문, 그리고 주민등록증 용지에 엄지손가락 회전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공화당은 5. 10. 국회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민등록증의 발급규정을 삽입한 주민등록법 1차 개정안은 위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이 단독처리될 때 함께 통과된 것이다(조선일보 1968. 5. 11.자 1면).

48) 하지만, 정부는 1968. 12. 말까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1,574만명 대부분에게 각자 고유한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2. 11. 18. 18면).

나. 지문날인제도 자체의 위헌성

(1) 지문날인제도 자체는 이 사건 위헌소원의 대상은 아니나, 위헌소원의 대상인 경찰청의 지문사용행위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미리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소원도 함께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은 17세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지문날인을 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주민등록발급신청대상자인 17세에 달한 자와 접촉하지 못하여 이 사건과 함께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2) 지문날인행위는 우선 굴욕적인 것이므로, 지문날인강요행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그 강요주체가 국가일 경우 침해의 정도는 더 강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문날인강요는 강제체결과 마찬가지로 타당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기본권 주체의 자유로운 행동과 사고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문날인강요는 행복추구권의 일 내용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죄자나 외국인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타당한 목적을 가진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우리의 경우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이 점만으로도 위헌입니다. 다만, 1997. 12. 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종이제질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형태로 만들기로 하고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카드'에 수록할 사항으로 지문을 명시하게 되었고(그 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의 서식이나 기재사항은 전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었음. 법률 제5449호로 개정되기 전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4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전자카드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기로 한 계획이 포기되고 원래의 법률로 재개정된 1999. 4.의 개정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명시하면서 지문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관한 것일뿐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⁴⁹⁾, 지문날인제도의

49) 이전의 법률과 달리 1997. 12. 17.자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에서 '전자카드'에 수록할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은 전자주민카드에 반대하는 논자들이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비판의 하나로 전자방식으로 수록되는 데이터항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법률로 돌아가는 방식의 1999. 4.경 재개정법률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증에 기재할 사항을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다시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백지위임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4) 설사 위 제17조의 8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33호 서식을 모두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규정에 의한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관계없으며, 관계있다고 하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제한도 아닌 만큼 결국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5) 경찰청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는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1999. 7. 16.자 보도자료에서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의 경우 개인신원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한 위 보도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현실을 운운하고 있으나 열 손가락 지문날인행위와 분단국가의 현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문날인제도에 관하여 현재까지 경찰청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수집한 지문을 실제로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상, 지문날인제도의 입법목적은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의 경우 개인신원확인 필요 및 간첩유입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나아가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규율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설혹 위와 같은 목적이 헌법상 타당하다면, 범죄자 검거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법률에, 간첩색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률 또는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할 일이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에 규정하여, 주민등록사무의 일환으로 실시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6) 설사 경찰청이 밝힌 위와 같은 목적이 타당하다 한들,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때 신원확인 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채취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총 범죄 150만여건(형법범을 기준으로 해도 약55만여건)중에서 약1,000여건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경찰청 보도자료, 98년도 지문감식에 의한 검거건수) 3,600만명의 국민 모두로부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며, 대형사고 때의 신원확인문제는 사실 입법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전 국민의 지문이 이미 수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수적인 효과 내지 결과적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의 타당성을 논할 때 고려할 가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주장하는 지문날인제도의 목적 자체도 그

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개정법률 제17조의 8 제2항의 '지문'부분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7)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서 함께 시행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증의 입법목적이 타당하면 지문날인제도의 입법목적도 타당하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도 도입목적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으며 현재는 헌법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남용되고 있는데다 그 도입목적 자체도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의 도입, 시행과 지문날인제도의 도입, 시행은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함께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주민등록제의 역사 부분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민등록증을 도입한 이유는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는 입법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일반적인 서술로 변경한다면, 모든 성인의 국민에게 국가가 공인하는 신분증을 발행하고 이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위해를 주는 존재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신분증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신분증명법 참조50)).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도입목적은 모든 성인의 국민으로 하여금 전국 통일의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을 저렴하고 용이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불순한 존재를 쉽게 구별, 색출하도록 하는데 있고, 이러한 목적은 전국 통일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로 즉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발급할 때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분증 용지 자체나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의 지문 중 1개를 날인하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신분증 용지에 지문 1개를 찍도록 함으로써 족하므로(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용지에 지문 1개를 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지문을 발급기관이 보관할 필요도 없으며, 나아가 열 손가락의 지문 모두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필요성이 없습니다.

(8) 어느 모로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제도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기본권제한의 합목적성의 원칙, 최소한 제한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입니다.

다. 지문의 경찰청 보관 및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행위의 위헌성

(1)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이상, 수집한 지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당연히

50) 주민등록증은 그 형식과 내용의 모든 면에서 '주민'등록증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상 국가신분증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처럼 신분증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수록내용과 형식을 비롯하여 신분증의 용도와 수록정보의 이용한계(예를 들면 제시의무의 제한, 신분증발급 번호의 내용제한이나 이용제한 등) 등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헌입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한 지문정보를 수사목적
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화하는 경찰청의 행위는 지문
날인제도가 위헌인 점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
니다.

(3) 나아가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
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제한
의 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
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총 범죄 150만
여건(형법범을 기준으로 해도 약55만여건)중에서 약1,000여건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
여 3,600만명의 국민 모두로부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
는 합리적이며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4) 또한 경찰청이 일정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
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17세이상 국민 약3,600만명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하
면서 대상자를 찾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대상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영장주의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강제수사
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됩니다.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모아 두고 이 중에서 범인을 색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전 국민은 유죄로 추정되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다를
경우에만 무죄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이 유사하다는 이유만
으로 선량한 개인이 용의자로 몰려 범죄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수사를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에도 현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죄가 막 행해지려고 하는 경우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때에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일본 최고재판소 1969. 12. 24.)에
비추어, 우리의 지문날인제도는 모든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범죄수사의 용의선상에 올
려 두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5) 한편, 현대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은 자기
정보통제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로 파악되고 있고, 자기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지문은 이름이나 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이므로, 개인의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자기
정보통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
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가져가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전산화하는 행
위 또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 하겠습니다.

(6) 하지만 이 사건 위헌소원대상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굳이 위와 같은 구구한 논리를 펼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
모든 국민을 수사대상에 놓고 검색을 하도록 허용하는 지문날인제도와 날인된 지문의
경찰정보보관행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 구성의 토대가 국민이며 국가권력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곧 국민이라는 것인데, 국가권력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경찰
청이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최고결정
자인 「유권적 시민」(유권자 전체)에 대한 지문정보를 강제수집하여 범인색출에 사용하
는 행위는 곧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청이 지문원지를 보관하며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및
지문원지에 수록되어 있는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전산화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 1. 경찰청 1999. 7. 16.자 보도자료
- 1. 한겨레신문 1999. 7. 13., 7. 19.자 기사

1999. 9. 1.

위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변호사	도 재 형
변호사	진 선 미

헌법재판소 귀중

소 장

[별지 제8호서식]

정 정 청 구 서			
① 청구인	성 명	윤 현 식 외 199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별첨자료참조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별첨자료참조	
②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성 명	윤 현 식 외 199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별첨자료참조	
	주 소	별첨자료참조	
③ 정정청구의 내 용	화 일 명 칭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열 램 일 년 월 일
	정정할 항목	정 정 내 용 및 사 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서 십 지 지 문 원 지 및 지 문 전 산 자 료	별첨자료참조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합니다.			
2001 년 11 월 21 일			
청구인 윤 현 식 외 199 명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 하			

15015-01311민
94.9.26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 54g/m²)

[별지 제8호서식]

정 정 청 구 서			
① 청구인	성 명	윤 현 식 외 199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별첨자료참조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별첨자료참조	
②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성 명	윤 현 식 외 199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별첨자료참조	
	주 소	별첨자료참조	
③ 정정청구의 내 용	화 일 명 칭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열 램 일 년 월 일
	정정할 항목	정 정 내 용 및 사 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서 십 지 지 문 원 지 및 지 문 전 산 자 료	각 항목 폐기 및 반환 또는 삭제 (별첨자료참조)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합니다.			
2001 년 11 월 21 일			
청구인 윤 현 식 외 199 명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 하			

15015-01311민
94.9.26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 54g/m²)

<별첨 1>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서

청 구 인 : 별첨 명부

청구대상 :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청구내용 :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지문전산자료 삭제

청구취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면서,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경찰청의 공권력의 행사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정보제공목적과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십지지문원지가 경찰청에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정보주체인 청구인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즉각 폐기처분할 것, 그리고 동 십지지문원지를 전산조작처리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1. 지문날인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십지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민에게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마저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한낱 관리와 통제 대상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국민을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당연히 모든 면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제공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 원칙하에서 주민등록법이 운용되어야 함은 법률의 문제 이전에 지극히 당연한 일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당성조차 결여된 이유를 들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 수집목적을 넘는 경찰청의 십지지문원지 활용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와 부당함을 해소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보제공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우리 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률의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채취한 지문을 그것도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지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고, 그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고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 전체를 범죄자취급 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욱 강화·확대하려는 공공기관의 행위는 과연 이들이 국민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 국민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당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한 것이고, 그러한 날인행위조차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과정이었을 뿐 날인된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이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등록증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십지지문원지가 경찰에 이첩되어 수사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고지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수사자료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문을 디지털정보로 전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임의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으며, 이처럼 정보주체인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수집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목적인 "주민의 편의향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권고사항조차도 무시한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경찰청이 국민의 십지지문원지를 가져가 보관하고, 이를 디지털정보로 전환시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 거론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일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당장 십지지문원지는 폐기되거나 본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십지지문원지를 임의로 전환시킨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이 십지지문원지를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제공목적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며, 동사무소에서 채취한 십지지문은 이미 신분증의 발급 및 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을 마침으로써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경찰청이 이를 보관하고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십지지문원지를 폐기하거나 청구인 본인들에게 반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보관중인 십지지문의 디지털 자료를 즉각 삭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청구인 윤현식 외 199명

명단

- 강길용, 강내희, 강동일, 강문식, 강성래, 강지훈, 강창훈, 강철섭, 강현주, 강호중, 고광민, 고애순, 고유정, 공유식, 구미영, 구연영, 국충국, 권광현, 권민호, 권순형, 권혁구, 김강필, 김국상, 김기남, 김도현, 김동진, 김문정, 김미옥, 김민수, 김성민, 김성진, 김소영, 김수영, 김수진, 김승만, 김연정, 김영찬, 김용욱, 김용찬, 김용현, 김 우, 김원철, 김유진, 김유진, 김정열, 김정우, 김정화, 김지훈, 김지희, 김진균, 김창건, 김태완, 김하나, 김한울, 김해근, 김해영, 김현지, 김효정, 노선호, 노호선, 두건물, 라은영, 류고은, 류미경, 맹진영, 박건희, 박근복, 박김소현, 박동현, 박범용, 박범이, 박병관, 박병준, 박성혁, 박성은, 박성훈, 박승진, 박연주, 박종모, 박종일, 박주영, 박준도, 박준우, 박태수, 박혜영, 배영희, 백경민, 백은광, 백현석, 손영호, 송권봉, 송인애, 서영채, 신은정, 신치호, 신혜영, 안승혁, 안정민, 안효상, 엄상화, 오병일, 오석영, 오재형, 우민균, 유기윤, 유종범, 윤광식, 윤여협, 윤준희, 윤현식, 윤효상, 이광열, 이경민, 이경환, 이김영주, 이마리오, 이명호, 이상엽, 이상훈, 이석민, 이성우, 이성희, 이승환, 이안숙, 이영주, 이용근, 이은희, 이재관, 이재광, 이정준, 이정훈, 이종연, 이종희, 이주형, 이준범, 이현대, 이현주, 이호영, 임진우, 장여경, 장영석, 장영재, 장 휘, 전성식, 전성우, 전준범, 정문정, 정영철, 정왕현, 정용택, 정재훈, 정재훈, 정희경, 조기학, 조성래, 조수형, 조영민, 조영수, 조일준, 조종욱, 주병윤, 지아가, 진현규, 채경숙, 최기석, 최기원, 최문자, 최백길, 최성용, 최영선, 최영순, 최윤식, 최은아, 최정애, 최정인, 최종욱, 최진호, 최현순, 최현진, 하선영, 하정호, 한덕희, 한성훈, 한용희, 한윤강, 한 진, 한창규, 한희정, 허지수, 허창수, 홍문정, 홍민혜, 홍석만, 홍석영, 황규만, 황덕창, 황성희, 황승업, 황지식, 황혜승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정자치부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4874 / 전송 (02)3703-5544
자치행정국 주민과 과 장 노병찬 사무관 노창권 담당자 정혜순

문서번호 주민 13207-1361

시행일자 2001. 11. 30 ()

수 신 윤현식 외 199인 서울특별시 xxx xxx xxxxx xxx

참 조

제 목 십지지문원지 반환 및 십지문 디지털자료 삭제 청구회신

1. 귀하께서 청구하신 십지지문원지 반환 및 디지털된 십지지문자료의 폐지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안보·사회의 안정·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주민 생활편익 도모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문은 각종 범인검거, 재난사고 발생시 변사·행려사망자 등의 본인신분확인 등에 아주 유익하게 이용하여 국민생활의 보호와 대국민 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요구하신 십지지문의 원지반환 및 디지털된 십지지문자료의 폐지건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자료는 경찰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별지 제11호 서식]

정정연기통지서

윤현식 외 199명 귀하

주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제 27646 호

개인정보화일명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접수연월일	2001년 11월 21일			
당초정정기간	2001년 12월 5일			
정정연기사유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의뢰			
담당자	소속	수사국 과학수사과	직 급	과학수사계장
	성명	이 상 정	전화번호	02-362-1525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경 찰 청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1구37831 행정정보공개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원고 이마리오

서울 xxx xx xxx-xx (xx)

피고 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옥의천, 김재근

변론종결 2002. 1. 9

주문

1. 피고가 2001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한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6.1 피고에게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롯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운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 이 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그 외의 정보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하 위 2001. 6. 11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이에 원고는 2001. 7. 9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각 갑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

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다. 판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 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범죄의 수사와 재판외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각호로서 "1.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기타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4.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응 한 경우,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범죄수사나 재판 또는 위 각 호의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님은 원고도 다투지 않으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전과기록의관리와 형의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제1조), 위 법령에서 위와 같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사자료표에 나타난 피의자나 수형인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대하여 당해 피의자나 수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피의자 자신에 관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위 법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비롯한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제한규정을 들어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2002. 1. 30

재판장	판사	김치중
	판사	김성욱
	판사	정계선

정보목록

1. 원고에 관한 수사자료표
2. 원고에 관한 수사자료조회(수사자료표에서 우수무지를 제외한 부분을 전산자료로 작성한 것)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정자치부

우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4345	/ 전송 02-3703-5510
법무담당관실	담당관 정현을	사무관 임근기	담당자 구희숙

문서번호 법무 61240-356

시행일자 2002.05.13 (1년)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윤현식 귀하(서울시 xxx xxx xxx xxxxx xxx xxx)

참 조

제 목 행정심판 재결서 1부

1. 항상 우리부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재결하고 재결서를 보내드립니다.

2. 별첨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 재결서 1부. 끝

행정부인장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재 결			
사 건	02-02254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윤 현 식		
피청구인	경찰청장	참 가 인	
주 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및 제35조		
<p>위 사건에 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p> <p>2002. 5. 13.</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행정자치부장관</p>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11. 21.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신청은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정정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2001. 11. 2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증발급을 신청했을 때 무인한 청구인들의 십지지문원지를 피청구인이 범피수사목적으로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이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정보제공목적 및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또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십지지문채취제도는 그 자체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부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십지지문원지를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거나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전산정보로 변환한 것도 삭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정보를 열람한 바가 없어 청구인들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소정의 청구인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중 이마리오가 2001. 6. 11. 십지지문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회신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는 바, 이로써 이마리오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정보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십지지문을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지문감식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에게 정정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삭제, 폐기, 반환 등의 내용은 일체 규정되어있지 않아 청구인들이 동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를 한 것이고, 따라서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4조에서의 "정정"은 사전적 의미인 정정뿐만 아니라 삭제, 폐기, 반환을 위한 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청구인들에 대한 실제정보와 상이할 때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소정의 처리정보의 정정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보자체의 삭제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동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반환, 삭제, 폐기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의거 정보정정청구를 하려면 선행조건으로 동법 제12조에 의한 열람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 중 이마리오 외에는 열람청구를 한 적이 없는 점, 십지지문에 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각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점, 동법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정정신고·전입신고 및 국외이주신고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피청구인이 십지지문정보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들은 지문채취제도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그 침해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인데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이 건 청구의 이유로 삼는 것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정청구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2001. 1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정청구서에 의하면, 정정청구의 파일 명칭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로, 정정할 항목은 “십지지문원지 및 지문전산자료”로, 정정 내용 및 사유는 “각 항목 폐기 및 반환 또는 삭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을 통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열람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청구인의 실제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선행요건의 충족 없이 대상정보의 폐기·반환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어 정정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정정을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에게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전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행정청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정정청구서에 의해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거나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권은 사전적 의미인 정정뿐만 아니라 폐기, 반환, 삭제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정의 의미는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는다는 취지이지 더 나아가 폐기, 반환,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동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십지지문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2. 5. 13.

행정자치부장관

소 장

원고

성명 : 이마리오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생략

(연락처 : 생략)

피고 : 경찰청장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청구취지

1. 피고가 200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십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거부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독립영화제작단체인 서울영상집단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감독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중, 피고(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신상정보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관련된 수사기록표 등을 아울러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2001년 6월 11일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과수 61110-13978)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의 일부만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2001년 7월 16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과수 61110-17138)을 통해 기 통지한 정보부분공개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2001년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행정법원은 2002년 1월 9일 판결(2001구37831)을 통하여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며 따라서 원고에게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수행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가 피고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만 17세가 되던 해에 동사무소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한 것은 단지 주민등록증이라는 국가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의 열 손가락 지문이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피고에게 이관되어 보관되고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그 누구로부터도 원고의 열 손가락 지문이 피고에게 이관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으며, 원고 또한 피고에게 원고의 열 손가락 지문을 이관하라는 동의를 한 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원고는 2001년 11월 21일 원고 이외 199인의 연명으로 피고에 대하여 “십지문원지의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의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정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1년 12월 5일 정정연기통지서(문서 제27646호)를 보내 자문 변호사 법률 검토의뢰관계로 정정기한이 연기되었다고 통보하는 한편, 2001년 12월 14일에는 정정거부 등 결정통지서(문서번호 제61110-28157호)를 통해 원고 등의 개인정보정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2년 월 일 피고를 대상으로 한 십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하여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사건 02-02254)

2. 먼저 피고가 주장한 정정거부처분의 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정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첫째, 원고 등은 당해 정보의 정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정보의 열람을 한 사실이 없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인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둘째, 실령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정정을 위해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원고 등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상이함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개인정보의 정정을 위한 선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청구이므로 청구를 거부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피고는 또한 행정심판을 수행할 당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건 정정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면제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둘째, 원고 이외의 다른 청구인들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개인정보열람청구를 한 바 없는 등 청구절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발생하지 않으며,

셋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는 '정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반환 또는 폐기 및 삭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보주체에게는 정정청구권만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법률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넷째, 피고가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수집 보관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 등이 주장한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사항은 이유 없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다음의 논거를 볼 때 이유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항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정정거부처분이 항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는 우선 행정심판법 제3조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국민이 행정처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예로 들면서 원고 등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통하여 피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정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반환 또는 폐기 및 삭제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리상의 인정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원고 등에게 반환 또는 폐기 및 삭제에 관한 청구를 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는 물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관리, 이용 등에 관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각 법률이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 법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피고가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안전 및 행정효율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법률에 의한 행정업무수행에 있어 비록 법률의 규정에는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까.

그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인 본인이 자신의 정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보관, 관리, 이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기간에 과다하지 않은 비용을 들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국제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이나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국제기구의 개인정보관련 지침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원칙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정보주체의 권한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음은 다음과 같은 법률의 규정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이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 손가락의 지문과 같이 사상이나 신조와 같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공기관이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취급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 따를 때에만 공공업무의 수행 역시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목적조항 및 기타 조항을 해석하여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정정"은 말 그대로 현재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를 이유로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실제정보로 고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있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반환 및 폐기하는 것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파악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법의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정"이라는 말뜻을 국어사전이나 나옴직한 언어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법해석의 기본을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법의 해석을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의 해석이 실질적인 의미성을 담보하게 될 경우 이 건 청구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게 됩니다.

설령, 법률의 규정이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조리상 원고에게 청구의 권리가 있음은 다를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의 국제적 기준들이 본 건과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역시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선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 역시

인권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무리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바이며, 정보주체의 동의나 사전 고지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부당하게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결코 보관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리상으로도 폐기 및 반환 또는 삭제의 청구를 할 권리가 원고에게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이권 청구를 할 청구인 적격으로서의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행위는 당연히 항소의 이유가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거부처분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설령, 본건 청구인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의해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거부는 신청인에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 등이 본건 청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법률적 이익을 얻는 바가 없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 또는 이용 등에 관하여 얼마나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하여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전 국민의 심지문을 수집 관리하는 행위는 우선 수집과정자체에서 정보주체들의 의사와 합목적성을 배제함으로써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였으며, 다음으로 포괄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일체의 활용내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서 상시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원고가 본건 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실현함으로써 침해된 각종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은 그 목적과 수집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야하며 사용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보관되며 이용된다면 이것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열손가락 지문의 경우 피고는 불순분자의 색출, 범죄피의자 검거,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피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용도를 위하여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이 필요한 것인지는 의심스러운 뿐만 아니라 수집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행법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의 경우 범죄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바, 이것은 엄연히 범죄에 있어 필요한 증거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명백한 사건이 있을 것, 증거수집대상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 범위와 용도가 한정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것 등이 그것입니다.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남용을 피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칙이며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손가락지문의 경우 명백한 사건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수사대상으로 상정이 될 수 있으며 애초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된 적도 없습니다. 영장은 물론이려니와 본인의 지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상에도 경찰이 국민의 지문 일체를 보관 관리하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주민등록증이라는 국가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로서 본인의 지문을 날인했을 뿐이지 결코 언제든 자신을 범죄피의자로 간주해달라고 지문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화전개는 결국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열손가락지문을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할 것 및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권리 의무의 변동 또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 정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열람청구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열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정청구를 위해서는 "설령,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킬지라도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 절차"인 열람청구권 행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동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을 무시하고 동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야말로 "동법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무시하고 동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전혀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열람청구권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에 보유되어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수집을 차단하고 보다 정확 정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차를 없애기 위함임과 동시에 정보주체인 국민이 국가의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실질적인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본 법의 취지 그 자체로서 부당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법 제13조 제2호의 규정은 이러한 본법의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 법 제13조 제1호는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법 제14조 제1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리정보의 열람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2001년 6월 11일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과수

61110-13978)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일부 공개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회신을 통해 원고의 열손가락 지문이 피고에게 수집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지문이 피고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어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외 199명의 열손가락지문이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절차를 통한 확인이 없이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등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열손가락지문원지의 폐기 또는 반환 및 전산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피고가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전산데이터로 변환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입장의 표명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미 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한 절차를 중복되게 밟을 필요가 없음을 충분히 설득하였으며 이에 기한 기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인이 청구한 것은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열람청구가 아니라, ‘개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라고 주장하는 한편 “개인의 정보는 공연하게 알려진 것이 전혀 없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라는 본 건 청구와 전혀 무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건에서 원고 등이 요청한 것이 개인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인의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서 청구대상이 되는 행위 역시 본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부당하게 수집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원천적으로 없애달라는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격의 청구가 아님 은 누가 보아도 확실합니다. 더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수집 보관되어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본인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고 싶어도 일단 국가기관에 속한 정보인 이상 정보주체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매우 몰상식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고 등이 주장한 공연한 정보라 함은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 정보가 경찰청에 수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부적 개인정보가 공연하게 알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원고 등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인 동시에 자신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마치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 등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전 열람청구권 행사를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킬지라도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절차”라고 강변하면서 원고 등의 청구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무시하고 동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데는 적극적인 피고가 국민에게는 행정업무의 효율과는 관계없이 굳이 밟지 않아도 되는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하겠습니까.

4) ‘정정’이라는 용어에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하여

피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정정’에 대하여 “‘정정’만 규정되어 있고, ‘삭제 및 폐기 또는 반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사실에 부합한 정보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보주체에게는 정정청구권만이 있을 뿐 삭제 및 폐기 또는 반환을 위한 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하며 명확한 법률의 근거 및 확정된 사용 용도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보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무지한 소치에서 발현한 것이거나 혹은 이 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원고 등의 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법률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주장입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1996.6.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15 전원재판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등의위헌확인】)의 판례를 들면서 법률 규정의 반대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해당 판례에 근거가 되었던 해석기준을 오독한 결과 발생한 비논리적인 주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례가 가능했던 것은 형의 실효와 관계된 각종 기록의 폐기와 삭제에 있어서 수사자료표가 가지는 특성은 단지 개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 내지는 삭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자료표가 가지고 있는 수사상의 목적이 명확하고 수사자료표를 보관 이용해야하는 법률의 규정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논점은 간과한 채 단지 반대해석이 불가능했던 판례 하나만을 들어 본 건 청구에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손가락지문의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국가기관으로부터 증거물 등의 명목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연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국민이 만17세가 도래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이라는 국가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신분증발급과 관련된 본인확인의 절차로 지문을 제공한 것일 뿐 이것이 피고에게 전해져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열손가락 지문을 자신들이 수집 보관하는 법률상의 근거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 및 동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지서식 30호의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제17조의 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청과그소속기관동직제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들 어디에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 보관해야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위한 법률의 규정이라고는 오직 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상의 별지서식 제30호의 양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제도가 법률의 조문도 아니고 시행령의 조문에도 없이 단지 별지서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과연 피고가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수집 보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시행령이나 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확대되며 더욱이 국민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에 이를 적시한 것도 아니라 단지 별지서

식의 양식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타 피고가 자기주장의 근거로 든 법률의 규정은 본 건 열손가락 지문을 피고가 수집 보관하고 있는 행위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각 규정에 나와 있는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내용들이 열손가락지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를 근거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 보관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전환하고 활용하는 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

둘째, 가장 민감한 개인의 신체정보인 열손가락지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고가 수집하고 보관하는데 명확한 목적이 없다.

셋째,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국민이 이에 대하여 사전 인지한 바 없으며 그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넷째, 국가기관에 보관되어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단지 열람이나 정정으로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 또는 폐기 및 삭제 등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정정’에 대한 원고 등의 해석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 위반되는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정정’이 가지는 의미 자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부당히 반대해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므로 정보정정이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하여 1999년 9월에 제기된 “경찰청의 국민지문정보보관, 목적범위 이외의 활용, 지문정보의 전산처리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등 위헌확인】)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정보정정의 이유를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계류중인 헌법소원을 빙자하여 본 건 청구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고 등이 제기했던 정정청구는 지문날인제도 자체의 기본권침해 여부를 다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어야 하는 국민의 개인정

보의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은 물론 정보수집의 목적조차 불분명하게 수집되어있는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의 전산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의 헌법소원(99헌마513)은 법률의 근거 없이 피고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임의 활용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고 이 건 열손가락 지문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청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정’청구라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열손가락 지문의 채취가 각 기본권의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을 주장한 것은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동시에 대단히 부당한 제도라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열손가락 지문을 임의로 활용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거로 볼 때 피고가 주장하고 있듯이 기본권침해여부가 헌법소원에 계류 중이므로 본 청구가 정보정정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고 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문서번호 법무 61240-356)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정정’은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는다는 취지이지 더 나아가 폐기, 반환,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 등이 제기했던 십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02-02254)의 행정심판을 각하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가 제기했던 수다한 논거 중 오직 하나인 ‘정정’의 의미만을 논점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정정’의 의미와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복된 부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이유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전혀 생소한 이론의 전개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동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피고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정심판위원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그 경위야 어찌되었건 일단 한 번 국가기관의 권력작용에 의하여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불일치를 이유로 사전적 의미로서의 ‘정정’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된 본인의 정보를 합당하게 말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부당하게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집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예방할 권리는 있지만 사후에 이를 없앨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논리에 다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논리는 민주적 기반에서 성립한 국가기관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전제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채 행정효율만을 우

선시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위 및 자치에는 아랑곳없이 국가의 정보력만을 강제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행정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행정부라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나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 하에서 이처럼 구태의연한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연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히 소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행정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상기와 같은 논리에서 볼 때 이유 없는 것입니다.

4. 정정청구의 정당성과 거부처분 취소의 필요성

이상의 논거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는 논리로서 부당하고, 본 건 정정청구가 원고에게 대단히 중요한 권리의 변동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논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문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형태로 존재하며(萬人不同性), 생존하는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終生不變性)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정보를 '민감한 신체정보'라고 정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감한 신체정보가 위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래 수집목적에도 위반하며 더구나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행정적 편의를 위해 수집되고 임의로 활용되는 것은 심각한 국민기본권의 침해입니다. 특히 본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할 때 법률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국가기관이 훼손하고 있는 것에 다를 아닙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듯이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현행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자료관리규칙'(1991. 7. 31. 경찰청 예규 제67호, 개정 2000. 3. 10. 예규 제247호)에만 주민등록증발급신청 등을 경찰청이 접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1항), 경찰청의 '지문규칙'(1991. 7. 31. 경찰청 훈령 제64호, 개정 2000. 4. 1. 훈령 제301호)에 분류규정과 지문자료 전산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행위가 됩니다. 즉, 지문정보를 행정기관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규제행위가 되며, 이렇게 수집 보관된 개인정보를 경찰청이 활용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용하는 규제행위가 법률의 근거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법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이들 훈령 및 예규는 일반사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직무명령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들 훈령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법정주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률이 없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청 예규 제247호 및 훈령 제301호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법률의 해석상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단지 직무집행을 위한 예규 또는 훈령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접근권 및 참여권을 규제하고, 해당 예규 또는 훈령에 마치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열손가락 지문정보의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의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정정청구의 거부처분 및 동 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은 부당한 것이며 피고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논리는 이유 없는 것이므로 상기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정정연기통지서(문서번호 제27646호)
2.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문서번호 제61110-28157)
3. 행정심판청구서
4. 경찰청 답변서
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재결서(문서번호 법무61240-356)
6. 경찰청 보관 개인정보공개 일부공개 결정문(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 귀중

2002년 8월 1일

위 원고 (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 건 :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 이마리오

피 고 : 경찰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신 청 이 유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개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는데 있어 정보주체인 국민 본인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련 업무수행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인 국민은 국가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본 규정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및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인참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 역시 이처럼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개인참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재판의 전제성

본 건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원고의 열손가락 지문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괄적인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도 없이 임의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는 피고의 행위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위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십지지문원지를 원고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동 원지를 폐기하는 한편 동 원지의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 정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함으로써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당한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의 거부처분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의 결정적인 논거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정'은 단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실제 개인정보와 다를 수 있는 이유로 공공기관보유정보와 실제정보의 차이를 없애는 행위로 해석하고, 기타 반환·폐기·삭제 등의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동 규정의 '정정'에 반환·폐기·삭제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본 규정의 '정정'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 의미로서 '정정'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반환·폐기·삭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행정심판청구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피고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본 건 소송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위헌성 여부는 본 건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정정의 구체적 내용 부재 및 모호성에 의한 해석의 혼란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에는 ‘정정’ 이외에 ‘반환·폐기·삭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본 법률 어디에도 ‘반환·폐기·삭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률의 이와 같은 규정은 해석에 있어 본 법률 제14조 ‘정정’의 의미를 단지 사전적 의미로서의 ‘정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정’이라는 용어 안에 ‘반환·폐기·삭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OECD나 EU와 같은 국제적 기구들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이용에 있어서 개인참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경우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참가의 원칙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일곱 번째 원칙에서 개인참가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원칙이 개인의 참가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개인의 참여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이용관련업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참가의 원칙으로 규정한 일곱 번째의 원칙에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면서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정보를 삭제, 보완, 완성, 수정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할 경우 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인지 및 동의와 합법적인 절차가 요구되며, 기왕에 수집된 정보일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삭제까지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정보주체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본 원칙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항의 규정 내용은 다만 ‘정정’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 ‘정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정’과 관계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건 해석상의 대립에서 확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나. ‘정정’의 범위의 모호성

만일 본 규정의 ‘정정’이 ‘반환·폐기·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폐기·삭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본 법률 제4조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동의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는 정보수집이 목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의할 경우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본인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법률의 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분명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 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가 해당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범위 이외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일단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수집당시의 목적범위를 초월하는 분야에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됨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본인의 동의 없이, 더구나 본인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도 없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경우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천무효임으로 효력 없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반드시 삭제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는 목적범위를 초월하는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법률 제14조의 ‘정정’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여부뿐만 아니라 사전정보수집단계에서 개인이 공공기관의 정보수집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수집 자체를 차단할 수는 있어도 이미 공공기관에 수집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여타의 권리구제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위 (가)와 (나)에서 제기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 법률 제14조의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행위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건의 원인이 된 열손가락 지문의 채취와 피고에 의한 수집 보관 및 이용은 본 법률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정보이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제기와 적절한 해결을 정보주체 본인이 충분하게 실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위배

설령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률 제14조의 규정은 본질적 권리의 내용을 부당히 침해할 수 있는